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4차 본회의 (2014.11.04)

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

목 차

1 거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---------- 1

2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----- 3

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---------- 6

의안번호 제2014 - 73호

거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0. 16.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16.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4.

2. 제정이유

○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거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연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○ 거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

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○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 성실 이행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,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

다.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・제7조)

○ 아동・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・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・운영

라.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8조・제9조)

○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

마. 사례관리팀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16조)

○ 관내 아동・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연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・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4 - 78호

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0. 16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4.

2. 요구이유

○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: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

나. 위탁시설 현황

○ 골프연습장

- 위 치 : 거창읍 심소정길 39-36번지 일원
- 규 모

부지면적	건축물 규모				타석수	비거리
	층수	건축면적	연면적	구조		
3,917㎡	지상2층	258.0㎡	300.2㎡	철근콘크리트 구조	10타석	100m

○ 테니스장

- 위　치 :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-50번지 일원
- 규　모

계	테니스장		부대시설		
	앙투카코트	하드코트	관리사무소	조명시설	펜스시설
12면	6면	6면	1층 66.28㎡	12개	7,829㎡

다.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

라. 수탁자격 :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

마.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바. 예산지원 : 없음(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)

사. 관계법령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○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○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○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(관리위탁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동의안은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,

○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4 - 79호

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0. 16.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16.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4.

2. 계획수립 이유

○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계획의 수립 개요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
나.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
다.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
라.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마. 지역보건 세부사업계획
-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
-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
-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
- 사업분야별 총괄예산

바.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

사.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

아. 관련법령

- 지역보건법 제3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)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동 계획안은「지역보건법」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·제출한 계획서로서,

○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4개년 동안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비전과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계획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